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31 선고 2022가단72713(본소), 2022가단104528(반소) 판결
[임가공용역대금 등 청구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 변호사 김정규, 심보문

변론 종결2023. 5. 17.

판결 선고2023. 5. 3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52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3. 4. 3.까지 연 6%,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 축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강 임가공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철강 거래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고로부터 건별로 의뢰를 받아 피고로부터 받은 AISI 1018 탄소강 및 SUS 304 스테인리스강의 wire rod 선재를 round bar로 가공하여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거래처에 출고하는 임가공용역을 수행하였다.

③ 원, 피고가 위 각 임가공용역 의뢰 및 출고 당시 용역 단가에 관하여 합의한 바는 없다.

④ 원고의 월별 출고량과 감정 축탁 결과에 따른 월별 임가공용역 단가1)는 별지 1표 기재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가공용역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할 때마다, 원, 피고 사이에서 해당 임가공용역에 관하여 통상적인 임가공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도급계약 체결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예비적 주장인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용역 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6,325,410원[=(42,776,573원 + 81,155,618원) × 1.1]에서 원고가 스스로 청구범위에서 제외한 10,800,000원2)을 뺀 125,525,41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용역완성일 다음 날인 2021.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4. 3.까지 상법에 따른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무상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용역 대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가공 기계 및 공장 건물 사용이익 공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기계 및 공장 건물은 피고 소유이므로, 그 사용이익은 위 임가공용역 대금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실관계 갑 제22호증, 제23호증, 제32호증 내지 제3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F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는 2억 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2020. 7. 15. 15:00까지 E에 2억 원을 지급하며, E은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위 경매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2020. 7. 15. 위 합의에 따라 E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 피고는, 2020. 7. 15. 다음과 같이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경영합의: 원고가 2020. 7. 15. 이후로 C의 모든 경영권과 원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경영권을 상실한다.

- 매매계약 1: 원고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를 피고에게 매도한다. 피고는 원고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1억 원 이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피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한다.

- 매매계약 2: 원고 소유인 별지 3 목록 기재 기계를 피고에게 매도한다. 피고는 원, 피고와 E의 위 2020. 7. 15.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E에 2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피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되, 피고는 인도일 기준으로 원고의 G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억 3,700만 원을 인수한다.

③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은행, 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7. 29.부터 2021. 10. 1.까지 3차례에 걸쳐 G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변제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원리금도 계속 변제하고 있다.

④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점유·사용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임가공용역을 수행하였다.3) ⑤ 원고가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장소인 원고 소유 공장 건물과 그 대지는 위 2020. 7. 15.자 경영합의 및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登記되어 있다.

3)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위 기계의 점유를 이전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기계는 여전히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기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E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각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2억 원만을 지급하고 위 각 채무는 인수하지 못했고 위 기계의 점유를 이전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기계는 여전히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2020. 7. 15.자 경영합의에 원고 소유인 공장 건물과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장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위 공장 건물과 그 대지는 여전히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가 임가공용역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기계와 공장 건물 및 대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만약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기계가 피고 소유가 아니라면 피고가 E에 지급한 2억 원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기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E에 2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므로(또한, 위 매매계약은 현재까지도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2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빈

별지

1) 감정인이 피고가 출고한 round bar 완제품의 시장가격에서 피고가 제공한 wire rod 선재 가격, 피고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2) 원고는, 2020. 6. 1.자 차용증(을 제1호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021년 1월분부터 2023. 12.분까지 월 30만원 × 36개월(39개월은 오기로 보인다)분의 이자채권 10,800,000원과 원고의 위 임가공용역 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용역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기계는 별지 3 목록 기재 기계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3 목록 기재 기계는 인발사이즈가 10~30mm인데, 원고가 임가공용역을 하여 출고한 round bar 중에는 인발사이즈가 10mm 미만인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는 임가공용역 수행을 위해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기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